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9. 8. 화순군수
- 나. 회부일자 : '99. 9. 1
- 다. 상정일자 : '99. 9. 1 (제7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설명 : 총무과장 김종철
- 나. 개정사유
 -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3개년 (1999 ~ 2001) 동안 공무원의 정원을 단계별로 감축키 위함.
- 다. 주요 내용
 - 정원의 총수 규정 (안 제2조) - 총 597명
 - 집행기관의 정원 : 582명
 - 의회사무과의 정원 : 15명
 - 2000. 7. 31 까지의 정원(부칙 제2조 표1) : 641명 (집행부 625, 의회 16)
 - 2001. 7. 31 까지의 정원(부칙 제2조 표2) : 619명 (집행부 604, 의회 15)
 -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
 - '99년분 초과 현원의 신분 유지시한은 2000. 12. 31 (별정직은 6. 30)
 - 2000년 감축분은 2001. 7. 31 (별정직은 1. 31)
 - 2001년 감축분은 2002. 7. 31 (별정직은 1. 31)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정열)

- 정부의 제2단계 구조 조정 계획에 의거 전라남도와 협의를 거쳐 화순군 총정원 (663명)의 9.95%인 66명을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동안에 균형 감축키 위한 개정 조례안임.
- 행정자치부의 시군별 감축 목표를 성실히 이행 하였다고 평가되어 지나, 총정원의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의 복지향상

과 생활 민원처리 등 행정서비스 체제 강화라는 큰 목표에 부합되는 행정 조직이 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이후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때 군 본청의 실과소별 적정인원 배치 및 읍면 사무소의 필요인력 진단 등을 행정편위주의가 아닌 주민위주로 보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인력배치가 이루어 져야 할것으로 사료됨.
-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의 표준 조례안을 준수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개정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5. 토론요지

“ 생 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첨 부 :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화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97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82명
2. 의회사무과의 정원 : 15명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화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는 「표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2」를 각각 적용한다.

【표 1】 지방공무원 정원

| 구 분 | 정 원 |
|--------------|------|
| 정 원 의 총 수 | 641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 625명 |
| 2. 의회사무과의 정원 | 16명 |

【표 2】 지방공무원 정원

| 구 분 | 정 원 |
|--------------|------|
| 정 원 의 총 수 | 619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 604명 |
| 2. 의회사무과의 정원 | 15명 |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표1」 규정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2인(집행기관의 정원 22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별정직인 경우는 2000년 6월 30일)까지, 「표2」의 시행으로 정원 22인(집행기관의 정원 21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1년 1월 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2인(집행기관의 정원 22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직급별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2」의 규정에 대한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 (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 <u>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63명이며,</u> <u>다음 각호와 같다.</u></p> <p>1. 집행기관의 정원 : 647명 2. 의회사무과의 정원 : 16명</p> | <p>제2조 (정원의 총수) 화순군에 두는 지방 <u>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97명이며,</u> <u>다음 각호와 같다.</u></p> <p>1. 집행기관의 정원 : 582명 2. 의회사무과의 정원 : 15명</p> |